

보건진료소규정

제정 : 2011.05.01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3.10.01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8.09.13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명칭 및 위치) 본 진료소는 대원대학교 보건진료소(이하 “진료소” 라 칭함)라 하고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고 한다) 내에 둔다.

<개정 2011.11.22., 2021.12.01.>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본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·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진료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0.01.>

제3조(업무) 본 진료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한다. <개정 2013.09.01.>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<개정 2013.10.01., 2014.11.01., 2018.09.13.>
2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위생 <개정 2013.10.01., 2014.11.01., 2018.09.13.>
3. 응급처치 및 사고예방 <개정 2013.10.01., 2014.11.01., 2018.09.13.>
4. <삭제 2013.10.01.>
5. 보건교육 <개정 2013.10.01., 2014.11.01.>
6. <삭제 2018.09.13.>
7. 각종 의료기구, 의약품의 구입 및 관리 <개정 2013.10.01., 2014.11.01.>
8. 환자 진료 및 상담의 기록 유지 <개정 2014.11.01.>
9.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일체사항 <개정 2014.11.01., 2023.10.16.>

제4조(소장) ① 진료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방문요양센터장과 겸직한다. <개정 2013.10.01., 2014.11.01., 2018.09.13.>

② 소장은 진료소를 대표하며 진료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3.10.01.>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0.01.>

제5조(직원) 진료소에 간호사를 두며, 간호사는 타 관련부서와 겸직할 수 있다 <신설 2013.10.01.> <개정 2014.11.01.>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진료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입학학생취업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보건진료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진료소장이 된다. <개정 2013.10.01., 2014.11.01., 2021.12.01, 2023.10.16.>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진료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진료소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은 보직만료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3.10.01., 2021.12.01>

제7조 <삭제 2013.10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